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제 711 호
- 나. 발의자: 이해경, 박마루 의원
- 다. 발의년월일: 2015년 9월 1일
- 라. 회부일자: 2015년 9월 7일

2. 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전문스포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와 표현을 수정함.

3. 주요골자

- 가.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정원을 증원함(안 제3조).
- 나.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수정하여 정리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나. 예산사항 : 협의가 필요함.

다. 기타사항 :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안 개요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인 중 장애인경기부의 정원을 확대(20명→30명)하고 종목을 신설하여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진작시켜 우수 선수 발굴 및 양성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한편,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임.

나.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직장 체육의 진흥)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그리고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등)에 의해 2002년부터 서울시 체육회에서 운영 되어 왔으며, 현재 20종목에 134억원의 운영비(인건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등)로 158명의 선수 및 지도자[참고자료 1]가 활동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는 2007년 3월 설립된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3월 휠체어 농구팀이 창단, 2012년 7월 장애인탁구팀의 창단으로 현재 2개의 종목에 9억원의 운영비(인건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등)로 17명의 선수 및 지도자 [참고자료 2]가 활동하고 있음.

최근 3년동안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에 지원된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비장애인팀은 110억원, 장애인팀은 7억 8천만원, 2014년 비장애인팀의 예산은 124억원, 장애인팀은 8억 7천만원으로 각각 매년 꾸준하게 30%이상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예산 143억 3,200만원은 관광체육국 전체 예산 2,249억원의 6.4%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전체 예산 중 비장애인팀과 장애인팀의 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93%이상이 비장애인팀에 배정된 장애인팀은 전체의 7%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예산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비장애인팀	비율(%)	장애인팀	비율(%)	계
2013	11,100,000	93.43	780,000	6.57	11,880,000
2014	12,400,000	93.44	870,000	6.56	13,270,000
2015	13,432,020	93.72	900,000	6.28	14,332,020
총계	36,932,020	93.54	2,550,000	6.46	39,482,020

-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인원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팀은 현원에 대한 변화가 없으나, 비장애인팀은 160명에서 162명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158명으로 감소하였음. 2015년 현원은 비장애인팀 158명, 장애인팀 17명으로 이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정원(비장애인팀 170명, 장애인팀 20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인원증감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지도자	선수	계	지도자	선수	계	지도자	선수
비장애인팀	160	25	135	162	25	137	158	25	133
장애인팀	17	3	14	17	3	14	17	3	14
총계	177	28	149	179	28	151	175	28	147

- 동 조례의 제3조의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9월 30일 조례가 최초 제정된 이후 2002년부터 서울시 체육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당시는 비장애인팀으로 선수외 감독과 코치를 포함한 총 인원이 60명이고, 2006년 5월 4일 트레이너 포함 총 110명으로 정원이 확대되었음. 그 이후 2010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을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로 통합하여 관리함과 함께 비장애인팀은 170명으로 증원하고,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는 월체

어 농구팀이 창단됨과 동시에 12명의 지도자 및 선수가 증원되어 활동하다가 2012년 7월 탁구팀의 창단으로 지도자 포함 선수 5명이 늘어 현재까지 총 17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의 개정 현황]

조례제·개정일	정원변동현황(제3조 관련)		비고
	비장애인팀	장애인팀	
1999.9.30	60	0	감독,코치 포함
2006.5.4	110	0	쇼트트랙, 펜싱팀 창단 및 정원외 운영되던 여자축구부 통합운영, 트레이너 포함
2010.1.7	170	20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110명)와 서울시 체육회 실업팀(40명) 통합운영에 따른 인원 증감 -2010.3월 휠체어 농구단 창단 -2012.7월 탁구팀 창단

- 동 조례의 안 제3조가 개정되어 인원을 10명 증원하게 되면 초기에 최소 5억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며 이후 창단팀의 합숙소운영, 연습장 대여, 이동수단 확보 등 관련예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인건비 추가 소요예산 : 559,6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금액	산출내역	비고
계		559,600		
선수인건비	감독 계약직	80,000	40,000×2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별표2>의거 C등급 적용
	선수 계약직	232,000	29,000×8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별표2>의거 E등급 적용
기본경비 (훈련운영비)	합숙비, 대회참가비, 체육시설사용료, 피복비 등	233,200	23,320×10명	합숙비 1인 2만(200일지원) 체육시설료(월2,300천원) 대회참가비 90,000천원 ※6개대회×1,5000천원×10명 전지훈련비 40,000천원 ※ 국외 2회 지원×2,000천원×10명 피복비 8,000천원 ※ 400,000원×2회×10명
일반운영비	보험료, 교육비, 합숙소 운영비 등	7,800	780×10명	휠체어농구, 탁구팀 기준 적용
보상금	격려금, 포상금	6,600	660×10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별표3,4>의거 보상금 500,000원 적용 격려금 1~5명 이내 적용(국내, 국외)

○ 참고로 전국적으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인을 확인한 결과, 14개의 시도에서 252명의 장애인이 직장운동경기부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8개 종목에 32명의 선수가 활동을 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충남의 경우 서울과 동일하게 2개의 종목에 17명의 선수가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두 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의 경우 3종목에 23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고 재정자립도 또한 상위권인 서울은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전국 장애인구수 및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단위 : 명)

연번	지역	장애인구수	재정자립도 (%)	장애인직장운동 경기부 종목수	장애인직장운동 경기인원수
계		2,212,457	45.1	46	252
1	서울	398,908	80.3	2	17
2	부산	168,663	51	4	18
3	대구	115,983	46.9	4	27
4	인천	133,855	59.1	2	10
5	광주	68,288	44.2	2	11
6	대전	71,198	49.3	5	33
7	울산	49,014	63.6	4	21
8	경기	508,330	60.7	8	32
9	강원	98,970	19.7	3	23
10	충북	93,612	28.1	3	25
11	충남	124,721	11	2	17
12	경북	168,650	24.3	3	9
13	경남	179,276	29.8	1	6
14	제주	32,989	30.3	3	3

-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자치구 직장운동 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비장애인팀[참고자료 3]은 14개구의 13종목 15팀 98명의 선수가 활동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팀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운영을 기피하고 있어 전무한 상황임.

이는 자치구의 장애인체육은 비장애인체육에 비해 예산 및 활동인구가 적어 업무상 그 중요도가 미미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음과 동시에 장애인체육 전담인력이 없거나 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자치구[참고자료 4]도 상당수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 체육 활성화 시책이 필요함과 동시에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전환 즉, 재활·의료라는 인식에서 일반생활 체육영역으로 전환·발전되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성과 전문지도인력 및 체계적인 지원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명확하게 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조문 정비 내역〉

조례 조항(현행)	현행 조문	개정안 조문
제1조	소요경비	운영경비
제2조제2호, 제5호	적합한 경비로서 기타	맞는 경비로 그 밖에
제3조제1항, 제3항, 제6항, 제7항, 제7항제1호	시장 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담당팀장 관하여 필요한 자 호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 담당팀장 필요한 사람 호명하여 선출
제4조제1항, 제2항, 제2항제7호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한다고	맞는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
제6조제1항, 제2항	소요경비 인정하는 때 따른 소요경비 산출	운영경비 인정하는 경우 따라 운영경비 계산
제7조제3항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제1항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제11조	운영에 있어	운영에서
제12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다. 결론

- 현재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인원의 결원이 3명에 불과하여 추가 종목확대가 현실적으로는 곤란한 상황이며, 조례개정으로 종목을 신설한다면 동계종목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 위주 창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서울시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타·시도 대비 소속 선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수도 서울의 대표성을 감안할 때 확대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현재 17명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9억원인 것을 감안할 때 10명을 추가로 확대할 경우 연간 5억원(1인당 5천만원, 훈련비 포함)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체육회 정기총회 등 종목별 대표자와 시장님과의 면담시 장애인팀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 요청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바, 현재는 관련 조례 개정,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규창단을 억제하고 있으나, 조례가 개정될 경우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할 것을 감안한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이후 신중히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1 비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연번	종 목	2015년 정원			창단시기	비고
		합계	지도자	선수		
경기인 합계		158	25	133		
1	양궁(남)	5	1	4	1985.2	
2	육상(남)	6	2	4	1988.1	
3	복싱(남)	7	1	6	2002.1	
4	사이클(남)	11	2	9	2004.1	
5	사이클(여)	8	2	6	2004.1	
6	체조(남)	6	1	5	2004.1	
7	스피드	5	1	4	2005.8	
8	펜싱(여)	9	1	8	2006.1	
9	축구(여)	26	3	23	2004.1	
10	쇼트트랙	7	1	6	2007.4	
11	탁구(여)	7	1	6	2007.6	
12	핸드볼(여)	17	2	15	2008.7	
13	정구(남)	8	1	7	2002.1	
14	트라이애슬론	5	1	4	2005.2	
15	핀수영	4	1	3	2007.1	
16	사격(여)	7	1	6	2008.3	
17	조정(남)	5	1	4	2009.1	
18	탁구(남)	7	1	6	2009.5	
19	태권도(여)	5	1	4	2009.8	
20	당구	3	0	3	2011.8	

〈참고자료2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연번	종 목	2015년 정원			창단시기	비고
		합계	지도자	선수		
경기인 합계		17	3	14		
1	휠체어농구	12	2	10	2010.3	
2	장애인탁구	5	1	4	2012.7	

<참고자료3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 15개구 13종목 15팀 98명(2015년 5월 현재)

구분	계	종로	중구	성동	광진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양천	구로	동작	관악	강남	송파	강동
종목		역도 (여)	레슬링 (여)	유도 (여)	보디빌딩 (남)	펜싱 (남)	테니스 (남)	사격 (남)	롤러 (남)	테니스 (여)	레슬링 (남)	씨름 (남)	검도 (남)	체조 (여)	조정 (여)	카누 (남)
인원	98	4	7	5	8	6	5	4	8	6	7	8	10	7	6	7
계	6,413	247.3	442.5	306.3	290.6	455.5	476.4	285.8	467.1	519.9	564.4	483	560.2	528.8	433.4	351.8
시비 (단위:백만원)	3,187	117.3	192.5	143.8	230.6	244.5	185.8	154.2	287	203.7	256.3	333	332.9	118.8	167.4	219.2
구비 (단위:백만원)	3,226	130	250	162.5	60	211	290.6	131.6	180.1	316.2	308.1	150	227.3	410	266	132.6

〈참고자료4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별 장애인체육 담당 부서현황〉

연번	자치구	소속 및 직위	장애인체육 업무
1	종로구	관광체육과 생활체육팀	종로구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
2	중구	교육체육과 생활체육팀	장애인체육관련 업무
3	용산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장애인체육관리
4	광진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
5	동대문구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장애인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6	중랑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
7	성북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장애인체육회
8	노원구	장애인지원과 장애인정책팀	장애인체육회 관리 및 운영 등
9	은평구	생활체육과 체육진흥팀	장애인체육 발전계획 수립 및 은평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및 관리
10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장애인 및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11	마포구	생활체육과 체육진흥팀	장애인생활체육
12	강서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장애인체육회 업무
13	구로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
14	금천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
15	영등포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장애인체육회 운영관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16	동작구	생활체육과 체육복지팀	사회적약자(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개발, 장애인 체육 운영 및 지원
17	관악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장애인체육 관련 업무 없음
18	송파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장애인체육회 운영
19	강동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
20	성동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장애인체육회 구성
21	강북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
22	도봉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
23	양천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장애인체육회 지원
24	서초구	문화체육관광과 생활체육팀	×
25	강남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장애인체육회

※ 비고는 자치구 홈페이지(조직도) 주무부서의 장애인체육업무 명시여부 표시